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41
----------	-------

발의연월일 : 2026. 2. 25

발 의 자 : 최수진 · 안철수 · 김은혜
김미애 · 구자근 · 최형두
서지영 · 김소희 · 강선영
김예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정책 방향 제시, 외교·안보 메시지 발신, 재난 대응 등 국정 운영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공적 의사표현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실제로 대통령의 SNS 게시물은 사실상 공식적 정책 신호로 받아들여지며 외교적·행정적·정치적 파급력이 큼.

그러나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의 개인 명의 SNS 계정에서 생산된 게시물 등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정권별로 보존 범위와 관리 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어 왔으며, 직무수행과 관련된 게시물의 임의 삭제·변경에 대한 법적 통제도 불명확한 실정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발언은 국가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행위로서 역사적·행정적 보존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음.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는 기록의 생성과 삭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명확한 법적 근거와 자동적 보존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대통령의 SNS 기록물은 행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음. 대통령의 정책 발언과 실제 정책 집행 사이의 연계성을 확인하고, 향후 정부 인수·인계 과정에서 정책 결정의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도 체계적인 기록 관리가 필수적이며,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요구되는 책임정치와 기록행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비서실 등이 운영하는 SNS 계정뿐 아니라 대통령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개인 명의 SNS 계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도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자동 수집·보존 의무 및 임의 삭제 금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록관리의 공백을 해소하고 국가 기록관리의 통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 함(안 제2조 등).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말한다”를 “말하며, 대통령 또는 대통령비서실 등이 운영하거나 대통령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서 생산·게시·전송된 전자적 기록정보(게시글, 댓글, 이미지, 영상, 메시지 등을 포함한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대통령 사회관계망서비스 기록물의 범위) ① 대통령이 개인 명의로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이라 하더라도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게시된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 관련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판단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기록물은 제2조제3호의 대통령 개인기록물로 분류할 수 없다.

제11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이 자동으로 수집·저장·보존될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대통령 또는 관계기관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기록을 임의로 삭제·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른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1. ----- ----- ----- ----- ----- ----- ----- ----- ----- ----- -----말하며, 대통령 또는 대통령비서실 등이 운영하거나 대통령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서 생산·게시·전송된 전자적 기록정보(게시글, 댓글, 이미지, 영상, 메시지 등을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1의2. ~ 3. (생략)	1의2. ~ 3. (현행과 같음)
<신설>	제2조의2(대통령 사회관계망서비스 기록물의 범위) ① 대통령

제11조(이관) ① ~ ④ (생략) <u><신설></u> <u><신설></u>	<u>이 개인 명의로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이라 하더라도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게시된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로 본다.</u> <u>②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 관련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판단한다.</u> <u>③ 제1항에 해당하는 기록물은 제2조제3호의 대통령 개인기록물로 분류할 수 없다.</u> 제11조(이관)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이 자동으로 수집·저장·보존될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⑥ 대통령 또는 관계기관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기록을 임의로 삭제·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른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	---